

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

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·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.

①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(국문)	
②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(영문)	
③ 정부기능 분류체계(BRM)	
④ 보유 근거(법령)	
⑤ 키워드(3개)	
⑥ 공공데이터 설명	
⑦ 제공대상 여부	제공 [] 부분제공 []
	미제공 [] 미제공 사유: () 미제공 근거 법률: ()
⑧ 향후 제공	향후 제공 [] 향후 제공 연도: () 향후 제공 사유: ()
⑨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	예 [] 아니오 []

작성 방법

1. “②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(영문)” 항목은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2. “③ 정부기능 분류체계(BRM)” 항목은 정부기능 분류체계(BRM)의 정책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3. “⑧ 향후 제공” 항목은 즉시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, 향후 제공 연도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.